

養護教師의 當面課題

~우리도 가르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보건소〉 김진희 —

그동안 數年을 두고 우리 양호교사들은 T.O. 確保問題니 號俸策定問題, 補修教育問題, 資格規準問題 등 여러가지 問題들을 가지고 會議를 通해 討議도 하고 關係 要路 人士들과 接見도 하고 論議도 했고 또 해마다 열리는 總會 때에도 支部 상정案件中 이러한 問題들이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이 論議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職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恒常 安定되지 못한 不安한 職場生活을 해야만 했다.

外國의 境遇 養護教師는 학교 간호원으로서 保健看護員의 一員으로 地區 保健所에 屬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로점이 없지만 우리나라인 境遇 학교 간호원은 학校에 所屬되어 있으니 教師라는 名稱이 붙어야 되고 그래야만 學生들로부터 先生任으로서의 尊敬을 받게 되고 또 本人들이 任務 途行하는데 그려한 名稱이 必要한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度外視 應하는 것이다.

그래서 養護教師 資格證을 획득하

기 위한 教科課程에는 學校 保健을 위한 講義보다도 教職科目를 많이履修해야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도一般教師와 同等한 待遇를 받는 것이 아니라 不必要한 存在처럼 生覺해서 의붓자식 같은 待遇를 받아오고 있다.勿論 校長 재량에 따라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實情이다. 또 養護教師는 염연히 醫療行為를 하고 있으나 保社部소관이 아니고 文教部 소관이기 때문에 또한 애로가 많다. 文教部에서는 醫療面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에 따라 우리들의 努力의 實効는 微微하나마 보여지는듯 學校校長들도 좀 달라져서 保健의 重要性을 느끼고 있는듯 하다.

1967年 3月 10일에는 學校 保健法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해서 方今 施行令을 만드는 段階에 있으며 近來에는 日刊新聞이나 다른 報道 機關에서 報道된 바와 같이 많아 어른화

되고 있다. 今年 各級學校 新入生들의 健康狀態가 아주 低下되어 學校保健의 赤信號를 올리고 있어 學徒 健康 管理가 問題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原因이 어디서 基因하는가? 우리는 한번 反省해 볼必要가 있다. 첫째는 教育 담당者들이 健康을 無視한 教育을 했고 둘째는 양호교사들이 法的으로 一般教師와 同等한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國內外로 職場을 離脫하는 수가 많이 生겨 양호교사의 質的 量的 低下를 招來하고 있기 때문에 學徒 健康管理를 그릇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양호교사들의 待遇改善으로 學校를 離脫하는 사람이 적게 하므로서 시정될 것이다. 國民學校에 있어서의 俸給策定안 보더라도 一般教師는 初號俸이 33號俸에서始作하는데 양호교사는 36號俸인 3號俸이나 낮은 號俸이니 進級에 있어서도 3年이나 늦어지는 것이다. 中高等學校는 T.O.도 確保못해서 강사의 대우를 받고 있으니 自然 대우 좋은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이니 자라나는 二世國民의 學徒保健에 큰 問題가 아니 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後進國에서는 더욱 重要한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大部分 home doctor 들이 있어 家庭에서 다 健康管理를 하고 있지만 우

리나라는 그것이 아니니 學校에 있어서 양호교사의 位置가 얼마나 重要한가는 너무나도 잘 아는 事實이다. 또 外國과 같이 保健看護員이 保健所에 屬해서 各級學校를 巡迴하면서 하는 식의 學校看護도 우리나라에는 適當치 않다. 現行 양호교사 制度로 하되 法的 根據를 確實히 해야겠다. 勿論 現行 教育法 施行令 第2節 國民學校 第46條에 依하면 18學級 이상의 國民學校에는 양호교사 1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無醫村에 있어서는 18學級 未滿의 경우도 양호교사 1人을 두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實行을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全國의 國民學校數는 4,824校인데 18學級 以上인 학교수는 1,112校이다. 여기에 1名씩만 配置해도 現在 人員 829名을 빼면 283名이 더 配置되어야 한다. 그런데 T.O는 847名뿐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보다 나은 學校保健management를 위해서는 한 학교에 最少 2名씩은 配置되어야 保健教育等 주어진 業務遂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제에 T.O.도 確保못하고 있다는 것은 文教部 當局에서도 考慮해야 할 점인 것이다.

中高等學校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T.O.조차 없어 大學 出身인데도 不拘하고 강사 대우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教育法 施行令에는 第3節 中學校 第48條, 第4節 高等學校 第51條, 第5節 大學校 第53條 양호교

사는 定員 外에 들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當面問題들을 어떻게 打開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健康을 外面한 教育이 시정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자라나는 2世國民을 키우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健康이 있고 學業일 텐데 現在 우리나라 實情은 뒤바뀐 현상이다.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려면 學校保健의 重責을 맡은 양호교사들의 法的인 T.O. 確保와 同時に 一般教師와 同等하거나 그以上の 대우를 위해서 改善되어야겠다. 그렇지 못한限 양호교사의 보다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학교 이달은 不可避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學校健康 管理는 自然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重責을 遂行하려면 우리는 質的으로 보다 나은 양호교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現行 양호교사 資格規準은 시정되어야 하겠다. 即 양호교사가 되려면 定規看護學校를 나오고 6個月乃至 1년의 特殊訓練機關이 있어서 여기를 修了한 사람에게 限해서 國家試驗을 거쳐 資格證을 획득하는 과정을 마련해야된다. 그리고 現職에 있으면서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補修教育과정이 마련되어야겠다. 이것은 現在 保健院에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임시가 아니고 永久的인 과정으로 되기를 바란다.

셋째는 우리 양호교사가 直接 保健教育을 시켜야겠다는 것이다. 各級學校 教科科程 속에 간호학이라는것이 있어 양호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을 담당케 해야겠다. 그래야만 學校保健教育이 철저히 되는同時に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學校에서 배우를 받을 수 있는 한 條件이기도 하다.

넷째로는 文敎部나 道, 市敎育委員會에 學校保健課나 係가 있어서 行政面에 專門職員이 담당해야 되겠고 또 市, 道單位로 하나씩 學校健康管理制度所 (現在 서울市에 하나 있음)가 세워져야 되겠다. 各級學校의 結核管理, 寄生虫管理(大便検査), 口腔管理 등 學校에 施設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巡迴하면서 담당해야 되겠다.

다섯째는 文敎部와 保社部와 學校保健專門職員 사이에 學校保健委員會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恒常 保社部에서는 文敎部소관이니하고 無關心하고 文敎部는 醫療面을 잘 모르니 등한하게 되어 그 中間에서 양호교사를 濫害를 입을 뿐만 아니라 學校保健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양호교사는 文敎部에 屬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醫療行爲를 하는 것이니 보다 나은 學校健康管理를 위해서 이러한 常任機關가 마련되어야겠다.

이러한 問題들이 빠르게 解決되어야겠고 또 解決되는 날 우리 學校保健管理 및 양호교사들은 헛벌을 보게 될 것이다.